

1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 관련

Q1-1. 최종목표와 연구내용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A. 본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총 5가지 형태의 RFP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숙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제품형’ RFP의 경우 최종목표와 연구내용 모두를 필히 충족하여야 합니다. ‘품목지정형’, ‘조기성과창출형’ 및 ‘선도기술개발형’ RFP의 경우는 최종목표는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연구내용은 해당 분야의 주요 내용을 기술한 것으로, 연구자께서는 RFP명, 최종목표 및 현장수요와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연구내용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분야 예시>는 RFP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된 예시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Q1-2. TRL 시작 및 종료 단계는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

- A. 본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의 TRL 단계는 다양합니다. 특히, 각 RFP에서 시작 및 종료 단계를 제시하여 해당 과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단계별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TRL 시작 단계는 연구자의 개발 역량 및 기간을 고려하여 종료 시까지 최종 목표의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과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TRL 종료 단계는 과제 종료 시까지 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Q1-3. “미래핵심기술형” 과제의 경우, 최종목표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 A. ‘미래핵심기술형’ RFP의 경우, 최종목표는 SCI(E)급 논문 1편, PCT 1건 (출원 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목표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PCT는 출원도 포함하도록 안내되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Q1-4. 단계과제의 경우, <단계목표 설정 시 중점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 단계과제의 경우에는 <단계목표 설정 시 중점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계 평가 시에 중점적인 평가 항목을 안내한 사항으로 연구 계획서의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에 관련 내용을 고려하여 단계별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본사항 관련

Q2-1. 3책 5공이 뭔가요?

A.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중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참여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적용하지 않으며, 공동연구원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 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 과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2.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RFP에 지원 가능한지요?

A.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구자 기준 : 한 연구주제(RFP 관리번호)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주관기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것은 중복신청에 해당합니다.
- 기관 기준 : 기업의 경우 각 'RFP 관리번호(예: 2020-1-1-1-전략-1)'별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이나 대학의 경우 RFP 관리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기 모든 경우에 관련 규정의 '3책 5공' 및 참여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2-3. 참여율이 뭔가요?

- A.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Q2-4.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 A. 주관연구기관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30% 이상, 참여기관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0% 이상 참여하셔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10% 이상 참여하셔야 합니다.

Q2-5. 연구개시일이 같은 2개 이상의 연구주제에 과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3책 5공(참여율)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A. 연구자께서 수행하고 계신 과제 현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증빙은 연구개시일이 같은 범부처전주기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복수로 신청하신 과제 중 2개 이상의 과제가 선정되었을 때 3책 5공 및 참여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표. 3책 5공(참여율)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제출 대상 예시

구분	기존 수행과제	복수 신청 과제(범부처)	제출 대상 여부
3책 5공	연구책임 1개	주관책임 2개	X
	연구책임 1개	주관책임 1개, 참여책임 1개	X
	연구책임 2개	참여책임 2개	X
	연구책임 2개	주관책임 2개	O → 3책 초과
	연구책임 1개, 공동(참여)연구 3개	참여연구원 2개	O → 5공 초과
참여율 (100% 기준)	30%	참여책임 2개(최저 20% × 2)	X
	60%	참여책임 1개(최저 20%) 주관책임 1개(최저 30%)	O → 참여율 초과

Q2-6. 주관/참여 연구책임자의 경력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나요?

A. 본 사업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 참여기관 연구책임자의 경력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상에 기재된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책임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Q2-7. 1차년도 연구 기간은 언제로 작성하면 되나요?

A. 1차년도 지원기간 및 예산은 공고문과 같이 6개월 기준입니다. 다만, 과제 시작일은 평가일정 및 협약일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계획서 작성 시에는 시작일을 7월 1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추후, 선정일 등을 감안하여, 협약 단계에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연차별 기간]

- 1차년도 연구 기간은 20년 7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6개월)
- 2차년도 연구 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이후 차년도 연구 기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3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Q3-1.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3-2.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사업과,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문제 해결 사업의 경우 전산으로 입력이 이루어지므로,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 환경 선도 사업의 경우는 직인을 생략하고 제출합니다.

단, 증빙서류(첨부파일 등)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Q3-3.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각 사업별로 접수시스템이 달라 온라인 제출 방법과 양식이 다릅니다.
 세부 사항은 **공고문 붙임파일 2~4의 사업별 작성요령 및 양식**을 참고해 주세요.
- 시장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4차 산업혁명 및 미래 의료 환경 선도: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nrf.re.kr)
 - 의료공공복지 구현 및 사회 문제 해결: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kr)

Q3-4. 연구개발계획서(사업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 A. RFP 유형에 따라 연구계획서 본문의 분량 제한이 있습니다.
- 연구계획서 본문 내용: 연구개발의 필요성,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 연구계획서 본문 내용 중 ‘세부연구목표 및 평가목표 착안점, 정량적 성과지표 및 목표, 보안등급의 분류 및 해당 사유’의 항목표는 본문 분량에서 제외합니다.

RFP 유형	연구계획서 본문 양식	연구계획서 본문 분량	첨부자료
전략제품형	공동양식	30페이지 이내	붙임1의 RFP별 내용 확인 후 공지된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품목지정형			
조기성과창출형		20페이지 이내	
미래핵심기술형			
선도기술개발형			

Q3-5.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할 시, 각각 계획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 A.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의 연구계획을 통합하여 주관연구기관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사업의 경우, 접수 시 주관연구기관은 총괄과제 및 1세부과제에 해당하므로 ‘주관기관용(총괄)’ 및 ‘참여기관용(1세부)’ 연구개발계획서 2개의 양식을 모두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참여기관용’ 계획서 양식은 본문내용 작성 부분이 없으며, 연구수행 역량과 연구개발비 명세, 장비 현황에 대한 내용만 작성합니다.
- 주관연구기관: ‘주관기관용(총괄과제)’ 1부 + ‘참여기관용(1세부과제)’ 1부 작성
 - 참여기관: 각 참여기관별로 ‘참여기관용(2세부과제, 3세부과제...)’ 1부 작성

<Q3-5. 추가설명>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안내

- 사업명(중):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의료환경 선도
- 세부사업명(소): 세부분야명(아래 연구주제별 참고)
 - 연구주제 2-1 -1 :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 연구주제 2-1-2 : 병원중심 IoT 기반 의료시스템
 - 연구주제 2-2-1 : 신개념 메디봇 시스템
 - 연구주제 2-2-2 : 차세대 마이크로 메디봇 시스템
 - 연구주제 2-3-1 : 의료기기 맞춤형 소재 및 소자
- 계획서의 대표적 연구실적(특허, 논문, 기타) 요약문 및 증빙자료는 연구계획서 본문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기관용 연구개발계획서의 표(양식A101-2) ⑧ 주관연구기관명, ⑩ 주관연구책임자의 경우, 참여기관(세부과제)에 대한 정보(참여기관명, 참여기관 책임자)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4 연구개발비 관련

Q4-1. <2020년 제2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 A. <20년 제2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RFP>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주관/참여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민간부담금 계산 시 해당 수행기관(기업)의 연구비는 해당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부담금(현금+현물)'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Q4-2.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A.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3.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계산 방법 :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간접비율 ≤ 간접비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구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대학 외 비영리기관		17%	-
영리 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
	기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

Q4-4.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 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5 참여기업 관련

Q5-1.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A. 연구개발사업 대상과제 공고문 또는 작성요령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Q5-2.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A.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5-3.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민간부담금(참여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A.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실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단, 참여기업 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5-4.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민간부담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과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항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 대비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 대비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 대비 25% 이상
민간부담(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부담액의 15% 이상	부담액의 13% 이상	부담액의 10% 이상
민간부담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직접비 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 = 해당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참여기업부담금)

※ 민간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 그 외의 수행기관은 필요 시 민간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

Q5-5.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A.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참고. 연구장비·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1. 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Q5-6. 청년 의무채용이 있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A.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의 '별첨4.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 3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출연금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연간 정부출연금	총 사업기간 지원금액	의무채용 인원
1억 원	3억 원	0 명
3억 원	9억 원	1 명
10억 원	30억 원	6 명

Q5-7.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A. 과제를 참여하는(주관/참여) '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위탁과제 관련

Q6-1. 위탁과제가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에서는 위탁과제 구성이 불가합니다. 단, 시험·분석·검사·임상 등의 위탁 연구를 대신하여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계상하여 용역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Q7-1. 전략제품형과 품목지정형의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전략제품형과 품목지정형의 경우 연구계획, 연구역량, 성과활용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기준별 평가지표 및 세부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항목	평가지표	RFP 세부 항목
연구 계획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RFP)와의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사업의 부합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한 과제로서 사업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연구 과제 여부와 과제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정부지원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명확하고 설득력있게 제시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 수요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현장 수요 및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 - 개발 단계별 임상역의 역할 등 - 연구 참여의료진에 대한 병원의 지원계획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계획에 제시된 임상 현장 미충족 의료수요가 명확하며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 연구기획 및 설계 단계부터 최종까지 임상역의 역할이 뚜렷하게 정의되었으며, 구체적인 수행방안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 임상역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공간 등 병원 단위의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목표의 구체성 및 내용·방법·연구비의 적절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목표 및 내용의 혁신성 및 우수성(세계적 수준 달성 또는 국산화 가능성의 정도), 새롭거나 기존 서비스와 비교한 차별성 및 경쟁력 소유 여부 - 개발목표가 구체적이며 정량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여부 - 질적으로 우수한 지재산권(PCT, 삼극특허 등) 창출 또는 제품화 가능 여부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및 효율성, 연구기간 내 목표 달성가능 정도 - 사업비 규모 및 계상 내용의 적정성
연구 역량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연구 추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자의 전문성, 혁신성, 추진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의 전문성, 혁신성, 윤리성 등(사전연구실적, 사업화실적, 혁신적 연구개발 능력 등) -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의 리더십 역량 및 참여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한 과제 목표 달성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원 등 연구조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진 구성 및 역할분담, 경력, 협력 인프라 등 ※ 각 수행 주체별 역할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진의 역량 및 역할, 참여 의료진의 역량 및 명확한 역할 분담 정도 - 연구기관 연구환경(연구인프라, 시설, 기반시스템, 협력지원 등)의 우수성 - 연구인프라 활용 계획의 적절성
성과 활용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전략 및 가능성, 성과(지식재산권, 기술이전, 인허가, 사업화 등) 창출 및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상에서 기 활용되고 있는 경쟁기술과의 뚜렷한 차별성 여부 - 임상역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한 아이템 여부 - 시장분석 및 투자계획의 적절성 및 합리성 - 사업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특허, 인허가 대응 및 보험등재 등에 대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 제시 - 과거 관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성과물의 과학·의료·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을 통한 과학·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가능성(기술이전, 매출, 수익,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국민 삶의 질 향상, 원천기술확보, 과학기술적 공헌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2020.1.) 발췌

□ 연구관리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용어	내용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 정보관련 시스템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문기관' 용어 대신 '전담기관'이란 용어를 사용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호)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4호)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5호)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비영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82'와 '83'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
연차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하며 대부분의 과제에 적용
다년도 협약과제(단계별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체결하는 과제
과제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인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용어	내용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0호)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 할 경우 '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학생 인건비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부당집행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비는 회수 조치 ※부당집행 사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회의비에 있어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적 허용) 집행한 경우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예)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뇌물(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운용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평가 및 기술료 등

용어	내용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
진도점검(연차점검)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 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
중간평가	연구과제의 중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컨설팅, 개선의견 제시 등 포함), 중단 등을 결정하는 절차
단계평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최종평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
추적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기술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실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용어	내용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1호)
사업화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서비스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관리 기타 용어

용어	내용
객원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과제담당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과제수행기관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국제공동연구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
기술실시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단계협약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체결하는 협약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민간부담금	연구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성과평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가 중요핵심과제
성과활용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개발활동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연구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대학과 구분할 경우의 정의이며,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과제수행기관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

용어	내용
연구비카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연구시설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연구장비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연차실적·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2차년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
유휴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저활용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전자정산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및 보완 후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의 오프라인 방식과 대별되는 정산 방식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참여제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학생연구원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대학, 학원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협약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 연구비 지급 방법 및 사용·관리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 간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문서를 교환하여 체결하는 협정
R&D 바우처 사업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바우처(출연금)를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사업